

[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등록준비-기탁금의 준비

기탁금의 준비

선거별 기탁금액

대통령	시·도지사	구·시·군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3억원	5천만원	1천만원	지역구 1천5백만원 비례대표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다만,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선거별 기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선거별 기탁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

• 납부시기 : 후보자등록신청시

• 납부방법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기탁금계좌에 후보자등록신청자(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정당) 명의로 무통장입금(이체)한 후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이체확인증) 제출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할 수 있음